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정신병원에서의 강제입원 제한 및 인권침해 개선
 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2월 15일

청 원 인

성 명 : 이 창 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대표 발의자 :: 이 창 희 (인) 외 29 인
 공동발의자::임민재, 김창환, 표진우, 장재영, 서대연, 엄정현, 김신우, 박형국, 남석
 원, 김현민, 강민주, 박예진, 박세린, 이윤지, 민보윤, 박소현, 이수진, 현지혜, 이윤주,
 최민정, 김주하, 최혜민, 김태준, 박형준, 김민규, 김도현, 김시온, 신경은, 허민정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창희
건명	정신병원에서의 강제입원 제한 및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2월 15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이창희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p> <p>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의 조건을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의학전문의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 45조에서는 의료목적을 위해서라면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제한 등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있다.</p> <p>이에 따라 본 인권위원회에서는 제24조를 개정하여 현행 법안을 보호의무자 2인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의학전문의 2인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고, 현재 계속 입원과 퇴원 심사를 맡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입원심사를 맡도록 한다. 제24조 2항에 명시된 정신질환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 45조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게 하되 환자의 폭력사용이나 돌발행위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제한을 허용한다. 단, 친인척, 본인, 혹은 정신의학 전문의가 병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의 사실여부와 제한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심의한다.</p>	

청원서

정신병원에서의 강제입원 제한 및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청원

1. 제안이유

현행 정신보건법 상에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 내 강제입원 및 가혹행위 등의 개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미흡하다. 현재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권한이 미약하고 기능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따라서 제24조와 제45조의 개정을 통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원심사 및 환자의 기본권 제한 심사까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의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의학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며, 환자의 행동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2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의학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다.

2. 주요골자

정신보건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입원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제 24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 입원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시 가정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환자의 폭력 사용이나 통제 불가능한 돌발행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할 경우 서로 다른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친인척, 본인 혹은 전문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의 사실 여부와 제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심의한다.

현행	개정문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u>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u>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u>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⑨(생략)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생략)
<신설>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입원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제 24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 입원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시 가정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⑨(현행과 같음)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환자의 폭력 사용이나 통제 불가능한 돌발행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할 경우 서로 다른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친인척, 본인 혹은 전문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의 사실 여부와 제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심의한다.

청원인 성명 : 이 창 희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